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1237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우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량등록사업소 2018. 11. 21. 접수 D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량등록사업소 2018. 11. 21. 접수 E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화학제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2016. 8. 16.경 주로 페인트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1인 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F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약 15년 전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F에 합계 62,973,658원 상당의 신나, 메탄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일부인 13,483,523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49,490,1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F과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31078)를 제기하여 2019. 6. 18. 'F은 원고에게 49,490,13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03199)를 제기하여 2020. 4. 28. 'C은 원고에게 48,505,6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각 판결은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8. 5. 11.부터 2018. 8. 8.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F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합계 48,502,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데, 그 중 27,200,000원(2018. 7. 20. 3차례 합계 18,000,000원과 2018. 7. 25. 2차례 합계 9,200,000원)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C은 이 범죄사실로 2020. 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9고단264)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그 판결 역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의 대표인 C이 횡령한 돈 중 27,2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횡령금 27,2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F에게 반환해야 할 것인데, F은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책임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없다. F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인 C이 저지른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거나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7,200,000원을 송금 받은 행위는 제3자 채권침해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8. 7. 20. F 명의의 농협 계좌(H, 이하 ‘법인 계좌’라 한다)에서 18,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후 바로 I에게 5,000,000원, 피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5,000,000원,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 법인 계좌로 다시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이 2018. 7. 20. 주식회사 J으로부터의 합의금을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합의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계좌와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후 K, L 등 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한 자금거래를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로 하였으며 법인 계좌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C이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부터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계좌인데 2018. 7.경부터는 F의 채무가 늘어나자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법인 계좌를 대체하여 주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계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18. 7. 20.부터 2018. 7.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27,200,000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C이 아닌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돈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2)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 돈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C과 15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C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그 돈이 피고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그 무렵 알았다거나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앞서 본 피고와 C 사이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이 저지른 업무상 횡령행위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8. 5. 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F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0. 4. 28. 'C은 원고에게 48,505,6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8. 1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를 25,500,0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 3,500,000원(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1.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피고가 C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C 사이의 관계와 당시 C의 경제적 상황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C은 2018.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매계약의 방식으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C이 2018. 7.경 F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자신 및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회사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자동차는 C이 보유한 재산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F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원을 수차례 대여해 주었는데 C이 그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양도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의 실질 가치는 1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의 가치는 3,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이 설립될 당시인 2016. 8. 22.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C에게 15,000,000원을 빌려준 적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회사 운영자금 조로 몇 차례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증여한 사실, 위 증여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가치 있는 재산인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비록 피고가 C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량등록사업소에 2018. 11. 21. 각 접수되어 마쳐진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

[별지]

목 록

1. 가. 등록번호 :
나. 차 명 : CHEVROLET IMPALA 2.5
다. 연 식 : 2018
라. 차대번호 :
마. 원동기형식 : LCV
바. 등록년월일 : 2018-3-13
사. 소 유 자 :
아. 사용본거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2. 가. 등록번호 :
나. 차 명 : 포터 II (PORTER II)
다. 연 식 : 2010
라. 차대번호 :
마. 원동기형식 : D4CB
바. 등록년월일 : 2010-2-17
사. 소 유 자 :
아. 사용본거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